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50호 2022. 2. 21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-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2-328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21일

예 천 군 수

1. 조례명 :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제정이유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 육성과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으로 예천군민의 생명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보조금 지원 내용(안 제3조)

-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
-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
-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·홍보
- 그 밖의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다. 재정 지원을 받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(안 제4조)

-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
-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
라. 비밀 준수의 의무(안 제5조)

- 응급의료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됨

마. 지도·감독(안 제6조)

-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
바. 지원의 취소(안 제7조)

-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
-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
- 제6조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

4. 제정조례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보건소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jss7754@korea.kr

2) 주소 : 우)36819 경북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, 예천군보건소

3) 팩스 : 054-650-647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보건소(전화: 054-650-8041)에 문의하여

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

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예천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응급의료”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·구조·이송·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.
2. “응급의료기관”이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.
3. “자동심장충격기”란 급성심정지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.

제3조(응급의료 지원) ①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 등의 재정
2.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

3.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·홍보
 4.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다.

제4조(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)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(이하 “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
2.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,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
3.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

제5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제6조(지도·감독)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의 취소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

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,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
2.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
3. 제6조에 따른 지도·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4.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